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9
----------	-----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경 의원의 16명
-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4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에 이바지해야 함. 이에,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어린이집 폐원이나 운영 중단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안 제19조의5 신설)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지나 일정 기간의 운영 중단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방지 등 영유아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u>

-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매년 400~500개소 가량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폐원 현황>

(단위 : 개소 수)

연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협동	직장
계	2,386	72	847	1375	13	39	14	26
2022	421	25	118	259	2	7	4	6
2021	408	12	129	250	5	5	2	5
2020	527	14	184	311	1	8	4	5
2019	537	14	206	296	1	11	4	5
2018	493	7	210	259	4	8	-	5

- 특히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온라인 입소 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 신청 후 결원을 기다리게 될 경우 다른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연계된 신속한 입소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 공백 방지 및 권익 차원에서 어린이집 폐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어린이집의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는 동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매우 인정된다고 하겠음.

○ 한편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제43조제1항1)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²⁾와 마찬가지로 폐지 수리의 인가권자 역시 어린이집의 관할 구청장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및 법시행규칙에는 규정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음.** 국공립어린이집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서울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국립시설로 법률에 따라 폐지절차를 적용받는 민간어린이집등과 달리 별도의 설치·운영이나 폐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의 인가절차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⁴⁾에 따르면 폐지나 휴지를 원하는 어린이

- 1) 「영유아보육법」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영유아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 원장은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5가지 서류(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고, 구청장은 신고 수리를 위해 법제43조제2항5)에 따른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즉 법상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및 폐지 등의 사무는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역할이나 권한은 사실상 실재하지 않다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 상위법상 어린이집 폐지·휴지 관련 사항은 구청장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시장의 의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폐지·휴지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명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5) 「영유아보육법」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영유아 권익 보호를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관할 자치구의 요청이 있거나 시 지원 필요시 시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어린이집 폐지·휴지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어린이집 원장) 폐지 또는 휴지시, 영유아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교직원 및 보호자 사전 고지, 전원조치계획서 등 제반서류 구청장 제출
- (구청장) 폐지 신고시 전원조치계획서를 검토, 이행여부를 확인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폐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 최소화 등 아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가 매우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의 폐원 등은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시장의 역할이 실제 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수리의 인가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관할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9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수리의 인가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관할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5 중 “경우에는”을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으로 하고, “관할 구청정과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u>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 ----- ----- <u>경우</u> <u>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u> ----- ----- ----- <u>협력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u></p>